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02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현

변론 종결2021. 8. 19.

판결 선고2021. 11. 4.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가단208567 판결

환송_전_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36084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5. 2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52,098,8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98,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분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2019. 5. 16.) 이전인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17조의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4. 3.경부터 2017.

10.경까지 C이 운영하는 'F'에 원단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 31. 'C은 원고에게 65,30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8가단856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3) 한편 2016. 5. 2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액수는 52,098,830원이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G, H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2016. 5. 21.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9.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 앞으로 ① 채권최고액 282,000,000원, 채무자 망인인 2006. 10.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06,800,000원, 채무자 망인인 2015. 1.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4. 채권최고액 68,4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8. 5. 1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2016. 10.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J조합에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먼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2 내지 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P 주식회사, R, 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인 2016. 5. 21.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485,085	예금채권(K은행)
2	5,029,352	적금채권(L조합)
3	1,800,000	공제채권
4	15,777,7771) = (건물가액 101,000,000원 - 채권자 X조합의 근저당권 실채무액 30,000,000원) × 2/9 지분,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그 채무액이 30,000,000원이었음이 인정된다.	상속재산(서울 중구 T 외 2필지 M쇼핑물 제8층 U호 중 2/9 지분)
5	28,000,000	전대차보증금채권2) 전대차계약 내용 : 전대인 R, 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015. 1. 16.부터 2016. 1. 15.까지(서울 종로구 N상가 4층 V호)3) 이하 '이 사건 전차점포'라 한다.
6	11,000,000	임차보증금채권4) 임대차계약 내용 : 임대인 S, 보증금 1,1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10.까지(서울 종로구 W 외 1필지상 목조·창고 16.53㎡ 1층 전체)5) 이하 '이 사건 임차창고'라 한다.
7	8,664,395	보험계약해지환급금
합계	72,756,609	

1	52,098,830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2	14,727,994	○보험 대출금
합계	66,826,824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표] 중 적극재산 순번 제5, 6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차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차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각 기간만료(2016. 1. 15.경 및 2015. 3. 10.경)로 종료되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의 각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C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만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R, 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차점포에 관하여는 C과 R이 2016. 2. 11. 보증금 28,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2. 16.부터 2017. 2.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1. 보증금 22,500,000원, 월차임 1,600,000원, 전대차기간 2017. 2. 16.부터 2018. 2. 15.까지로 정하여 또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차창고에 관하여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6. 3.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8. 3. 10.에서야 차임 미지급으로 S이 712,33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인 2016. 5. 21.에는 위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었고, 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위 각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된 연체차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경북 청도군 Y 등 7,438.0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이 운영한 'F'의 매출채권도 각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9.경부터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인 2016. 5. 21.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도 C이 2014. 1. 1.부터 2018. 1. 1.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의 위 'F'의 매출채권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인 2016. 5. 21. C의 적극재산은 72,756,609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66,826,824원이어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판사신진화

판사이주현

별지

1) = (건물가액 101,000,000원 - 채권자 X조합의 근저당권 실채무액 30,000,000원) × 2/9 지분, 원 미만 버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그 채무액이 30,000,000원이었음이 인정된다.

2) 전대차계약 내용 : 전대인 R, 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015. 1. 16.부터 2016. 1. 15.까지

3) 이하 '이 사건 전차점포'라 한다.

4) 임대차계약 내용 : 임대인 S, 보증금 1,1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10.까지

5) 이하 '이 사건 임차창고'라 한다.